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정부혁신업무 및 조직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농업생명정책관에 1개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외래 식물병해충 유입 대응에 필요한 인력 7명(5급 2명, 7급 3명, 8급 2명), 동물약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출입 동식물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4명, 7급 2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디지털 포렌식 확대에 따른 전문 분석·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 가금산물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7급 2명, 8급 4명), 국제공인실험실(KOLAS)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연구사 1명) 및 농산물품질관리 등 농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의 존속기간을 2022년 2월 28일까지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에 기후변화대응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교수 2명, 8급 1명), 국립종자원에 육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9.8.20.)됨에 따라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에 관련 기능을 추가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력 5명(4.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8급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 6급 2명, 9급 2명)으로 환원하며, 소속기관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직위 발생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해 일부 직렬을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및 직급조정 인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수출진흥과·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농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종자생명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 및 동물복지정책팀”을 “식품산업정책과·식품산업진흥과·외식산업진흥과·수출진흥과·유통정책과·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원예산업과·원예경영과·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농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종자생명산업과·동물복지정책과 및 농기자재정책팀”으로, “과학기술정책과장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을 “과학기술정책과장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및 동물복지정책팀장”을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6항 및 제17

항을 각각 제17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복지정책팀장”을 “동물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항 중 “농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종자생명산업과·농기자재정책팀 및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산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친환경농업과·종자생명산업과·동물복지정책과 및 농기자재정책팀”으로 한다.

1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 중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과·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로,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1과·식물검역2과 및 시험분석과”를 “운영지원과·축산물위생검역과·식물검역1과·식물검역2과·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로, “기술서기관으로”를 “기술서기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로,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를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지역본부”를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를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장(제3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

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4의 경기지원란, 충남지원란, 전남지원란 및 경남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기 지원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제외)
	수원사무소	수원시	경기도 중 수원시·안산시
	화성·오산사무소	화성시	경기도 중 화성시·오산시
	의정부·동두천·양주 사무소	의정부시	경기도 중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
	평택사무소	평택시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사무소	안성시	경기도 중 안성시
	남양주·구리사무소	남양주시	경기도 중 남양주시·구리시
	가평사무소	가평군	경기도 중 가평군
	광주·성남·하남사무소	광주시	경기도 중 광주시·성남시·하남시
	이천사무소	이천시	경기도 중 이천시
	용인사무소	용인시	경기도 중 용인시
	파주·고양사무소	파주시	경기도 중 파주시·고양시
	포천·연천사무소	포천시	경기도 중 포천시·연천군
	여주사무소	여주군	경기도 중 여주군

	양평사무소	양평군	경기도 중 양평군
	강화사무소	강화군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김포사무소	김포시	경기도 중 김포시·부천시
충남 지원	천안사무소	천안시	충청남도 중 천안시
	아산사무소	아산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
	공주사무소	공주시	충청남도 중 공주시
	세종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서산·태안사무소	서산시	충청남도 중 서산시·태안군
	논산사무소	논산시	충청남도 중 논산시·계룡시
	금산사무소	금산군	충청남도 중 금산군
	부여사무소	부여군	충청남도 중 부여군
	보령사무소	보령시	충청남도 중 보령시
	서천사무소	서천군	충청남도 중 서천군
	홍성사무소	홍성군	충청남도 중 홍성군
	청양사무소	청양군	충청남도 중 청양군
	예산사무소	예산군	충청남도 중 예산군
	당진사무소	당진시	충청남도 중 당진시
전남 지원	목포·신안사무소	목포시	전라남도 중 목포시·신안군
	무안사무소	무안군	전라남도 중 무안군
	여수사무소	여수시	전라남도 중 여수시
	순천·광양사무소	순천시	전라남도 중 순천시·광양시
	나주사무소	나주시	전라남도 중 나주시
	화순사무소	화순군	전라남도 중 화순군
	담양사무소	담양군	전라남도 중 담양군
	장성사무소	장성군	전라남도 중 장성군
	곡성·구례사무소	곡성군	전라남도 중 곡성군·구례군
	고흥사무소	고흥군	전라남도 중 고흥군

	보성사무소	보성군	전라남도 중 보성군
	장흥사무소	장흥군	전라남도 중 장흥군
	강진사무소	강진군	전라남도 중 강진군
	완도사무소	완도군	전라남도 중 완도군
	해남사무소	해남군	전라남도 중 해남군
	진도사무소	진도군	전라남도 중 진도군
	영암사무소	영암군	전라남도 중 영암군
	영광사무소	영광군	전라남도 중 영광군
	함평사무소	함평군	전라남도 중 함평군
경남 지원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진주사무소	진주시	경상남도 중 진주시
	사천사무소	사천시	경상남도 중 사천시
	통영·거제사무소	통영시	경상남도 중 통영시·거제시
	고성사무소	고성군	경상남도 중 고성군
	밀양사무소	밀양시	경상남도 중 밀양시
	김해·양산사무소	김해시	경상남도 중 김해시·양산시
	함안사무소	함안군	경상남도 중 함안군
	의령사무소	의령군	경상남도 중 의령군
	창녕사무소	창녕군	경상남도 중 창녕군
	하동사무소	하동군	경상남도 중 하동군
	남해사무소	남해군	경상남도 중 남해군
	함양사무소	함양군	경상남도 중 함양군
	산청사무소	산청군	경상남도 중 산청군
	합천사무소	합천군	경상남도 중 합천군
	거창사무소	거창군	경상남도 중 거창군

별표 6 총계 “602”를 “607”로 하고, 일반직 계 “598”을 “603”으로 하

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1”을 “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5”를 “14”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0”을 “102”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8”을 “10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7 총계 “607”을 “612”로 하고, 일반직 계 “603”을 “608”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1”을 “2”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7”을 “1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2”를 “104”로 하고,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6”을 “98”로 하며,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

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5”를 “36”로 한다.

별표 8 총계 “1,095”를 “1,110”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8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82”를 “1,110”으로 하고,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0”을 “12”로 하며, 농업주사 “92”를 “97”로 하고,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 “107”을 “110”으로 하고, 농업주사보 “123”을 “127”로 하며,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7”을 “32”로 하며, 수의주사보 “133”을 “135”로 하고, 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를 “4”로 하며, 농업서기 “76”을 “78”로 하고,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3.0”를 삭제하며, “농업주사 3.5”를 삭제하고, “수의주사 1.5”를 삭제하며,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고, “수의주사보 2.5”를 삭제하며,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9 총계 “1,095”를 “1,110”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082”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82”를 “1,110”으로 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 “5”를 “4”로 하며,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13”을 “15”로 하고, 수의사무관 “20”을 “19”로 하며, 농업주사 “90”을 “96”으로 하고,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4”를 “15”로 하며, 수의주사 “103”을 “107”로 하고, 농업주사보 “116”을 “120”으로 하며,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14”를 “15”로 하고,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27”을 “32”로 하고, 수의주사보 “126”을 “128”로 하고, 수의주사보·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2”를 “4”로 하며, “운전주사보 1”를 삭제하고, 농업서기 “71”을 “73”으로 하며, “운전서기 1”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9”로 하고, 운전서기보 “11”을 “13”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3.0”을 삭제하고, “농업주사 3.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 1.5”를 삭제하고, “농업주사보 4.5”를 삭제하며, “수의주사보 2.5”를 삭제하고, “농업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10 총계 “1,433”을 “1,452”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23”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23”을 “1,452”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33”을 “137”로 하며,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99”를 “102”로 하고,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44”를 “151”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4”를 “158”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19”로 하고, 방호서기보 “6”을 “5”로 하며, 농업연구사 “15”를 “16”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별표 11 총계 “1,447”을 “1,466”으로 하고,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37”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437”을 “1,46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40”을 “144”로 하며,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03”을 “10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41”을 “148”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154”를 “158”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을 “19”로 하고, 방호서기보 “6”을 “5”로 하며, 농업연구사 “14”를 “1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0.0”를 삭제한다.

별표 13 총계 “118”을 “121”로 하고, 특정직 계 “68”을 “70”으로 하며,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55”를 “57”로 하고, 일반직 계 “50”을 “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8”을 “49”로 한다.

별표 14 총계 및 일반직 계 “215”를 각각 “21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14”를 “216”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4호 각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준속기한: 2022년 2월 28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과, 원산지관리과 및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원산지관리과장 및 시험연구소 성분검정과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각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품질검사과장, 시험연구소 안전성분석과장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7에 따른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3명,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명,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

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3명,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4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9에 따른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명, 기술서기관 또는 수의사무관 1명, 농업사무관 9명,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 3명,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4명, 수의사무관 10명, 농업주사 12명, 수의주사 7명, 행정주사 3명, 전산주사 2명, 농업주사보 5명, 수의연구관 4명, 수의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 4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수의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 수의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 1명, 농업주사 13명, 행정주사 3명, 수의주사 10명, 농업주사보 12명, 행정주사보 3명, 수의주사보 7명, 전산주사보 2명, 농업서기 5명, 수의연구사 8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설정되는 별표 11에 따른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12명,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6명, 전산주사 1명, 농업주사보 5명, 운전주사보 1명, 열관리운영주사보 1명, 사무운영

주사보 2명, 농업서기 4명, 운전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6명, 행정주사·농업주사 또는 통계주사 12명,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6명, 전산주사보 1명, 농업서기 5명, 운전서기보 1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 농업서기보 4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농업생명정책관 동물복지정책과	3명 (5급1, 6급2)	2022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생략)	제12조(식품산업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산업정책실에 <u>식품산업정책과 · 식품산업진흥과 · 외식산업진흥과 · 수출진흥과 · 유통정책과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원예산업과 · 원예경영과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농산업정책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종자생명산업과 · 농기자재정책팀 및 동물복지정책팀</u> 을 두되, <u>과학기술정책과</u> 장 및 <u>종자생명산업과</u>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u>농기자재정책팀</u>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u>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u> 장 및 <u>동물복지정책팀</u>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다른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② ----- <u>식품산업정책과 · 식품산업진흥과 · 외식산업진흥과 · 수출진흥과 · 유통정책과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원예산업과 · 원예경영과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농산업정책과 · 과학기술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종자생명산업과 · 동물복지정책과 및 농기자재정책팀</u> ----- <u>과학기술정책과</u> 장 및 <u>종자생명산업과</u> 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u>동물복지정책과</u>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u>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u> 장----- ----- ----- ----- ----- -----

장을 보좌한다.

제17조(지역본부) ① (생 략)

② 인천공항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화물검역과 · 휴대품검역1과 · 휴대품검역2과 · 특수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영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며, 중부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1과 · 식물검역2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서울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과 및 전염병감사과를 두며, 호남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과 및 시험분석과를 두고, 제주지역본부에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두되, 각 지역본부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으로, 시험분석과장은 기술서기

-----.

제17조(지역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과 · 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운영지원과 · 축산물위생검역과 · 식물검역1과 · 식물검역2과 · 시험분석과 및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하며,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수의사무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식물검역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사무관으로,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농업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⑭ (생략)

⑮ 제주지역본부의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8 제2호, 별표 9 제2호,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

③ ~ ⑭ (현행과 같음)

⑮ 영남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및 제주지역본부-----
-----.

1. ~ 4. (현행과 같음)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4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
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
과 같다.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02</u>	<u>607</u>	+5
·	·	·	
·	·	·	
일반직 계	<u>598</u>	<u>603</u>	+5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u>1</u>	<u>2</u>	+1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5</u>	<u>14</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00</u> · ·	<u>102</u> · ·	+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98</u> · ·	<u>100</u> · ·	+2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	<u>35</u> · ·	<u>36</u> · ·	+1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07</u>	<u>612</u>	+5
·	·	·	
·	·	·	
일반직 계	<u>603</u>	<u>608</u>	+5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	<u>1</u>	<u>2</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7</u>	<u>16</u>	-1
·	·	·	
·	·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시설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전산사무관 · 공업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 ·	<u>102</u> · ·	<u>104</u> · ·	+2
행정주사 · 농업주사 · 수의주사 · 시설주사 · 통계주사 · 전산주 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환경주사 · 농업연구 사 · 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96</u> · ·	<u>98</u> · ·	+2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시설주사보 · 통계주사 보 · 전산주사보 · 공업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	<u>35</u> ·	<u>36</u> ·	+1

	.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5</u>	<u>1,110</u>	+15
1. <u>공무원</u> <u>계 (시간 선택 제 채용 공무원은</u> <u>제외한다)</u>	<u>1,082</u>	<u><삭 제></u>	-1,082
일반직 계	<u>1,082</u>	<u>1,110</u>	+28
.	.	.	
.	.	.	
농업사무관 또는	<u>10</u>	<u>12</u>	+2
농업연구관			
.	.	.	
.	.	.	
농업주사	<u>92</u>	<u>97</u>	+5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7</u>	<u>110</u>	+3
.	.	.	

•	•	•	
농업주사보	<u>123</u>	<u>127</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u>27</u>	<u>32</u>	+5
수의주사보	<u>133</u>	<u>135</u>	+2
수의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2</u>	<u>4</u>	+2
•	•	•	
•	•	•	
농업서기	<u>76</u>	<u>78</u>	+2
행정서기보	<u>4</u>	<u>5</u>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u>	<u>8</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신 · 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95</u>	<u>1,110</u>	+15
1. <u>공무원</u>			
<u>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 제외한다)</u>	<u>1,082</u>	<u><삭 제></u>	-1,082
일반직 계	<u>1,082</u>	<u>1,110</u>	+28
·	·	·	
·	·	·	
기술서기관 또는	<u>5</u>	<u>4</u>	-1
농업사무관			
·	·	·	
·	·	·	
농업사무관 또는	<u>13</u>	<u>15</u>	+2
농업연구관			
·	·	·	
수의사무관	<u>20</u>	<u>19</u>	-1
·	·	·	
·	·	·	

농업주사	<u>90</u>	<u>96</u>	+6
농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u>14</u>	<u>15</u>	+1
·	·	·	
·	·	·	
수의주사	<u>103</u>	<u>107</u>	+4
·	·	·	
·	·	·	
농업주사보	<u>116</u>	<u>120</u>	+4
농업주사보 또는 수의주사보	<u>14</u>	<u>15</u>	+1
농업주사보 또는 농업연구사	<u>27</u>	<u>32</u>	+5
수의주사보	<u>126</u>	<u>128</u>	+2
수의주사보 · 수의연구사 또는 농업연구사	<u>2</u>	<u>4</u>	+2
·	·	·	
·	·	·	
<u>운전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농업서기	<u>71</u>	<u>73</u>	+2
<u>운전서기</u>	<u>1</u>	<u><삭 제></u>	-1

행정서기보	4	5	+1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8	9	+1
.	.	.	
운전서기보	11	13	+2
.	.	.	
.	.	.	
사무운영서기보	9	8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3.0</u>	<u><삭 제></u>	-13.0
<u>일반직 계</u>	<u>13.0</u>	<u><삭 제></u>	-13.0
<u>농업주사</u>	<u>3.5</u>	<u><삭 제></u>	-3.5
<u>수의주사</u>	<u>1.5</u>	<u><삭 제></u>	-1.5
<u>농업주사보</u>	<u>4.5</u>	<u><삭 제></u>	-4.5
<u>수의주사보</u>	<u>2.5</u>	<u><삭 제></u>	-2.5
<u>농업서기보</u>	<u>1.0</u>	<u><삭 제></u>	-1.0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33</u>	<u>1,452</u>	+19
1. <u>공무원</u> <u>계 (시 간 선 택 제 채 용 공 무 원 은</u> <u>제외한다)</u>	<u>1,423</u>	<u><삭 제></u>	-1,423
일반직 계	<u>1,423</u>	<u>1,452</u>	+29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u>133</u>	<u>137</u>	+4
농업사무관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u>99</u>	<u>102</u>	+3
통계주사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u>144</u>	<u>151</u>	+7
또는 통계주사보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154</u>	<u>158</u>	+4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19</u>	+1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농업연구사	<u>15</u>	<u>16</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0</u>	<u><삭 제></u>	-10.0
<u>일반직 계</u>	<u>10.0</u>	<u><삭 제></u>	-10.0
<u>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u>	<u>10.0</u>	<u><삭 제></u>	-10.0

신 · 구 정원 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47</u>	<u>1,466</u>	+19
1. <u>공무원</u> <u>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u> <u>제외한다)</u>	<u>1,437</u>	<u><삭 제></u>	-1,437
일반직 계	<u>1,437</u>	<u>1,466</u>	+29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u>140</u>	<u>144</u>	+4
농업사무관			
.	.	.	
.	.	.	
행정주사 · 농업주사 또는	<u>103</u>	<u>106</u>	+3
통계주사			
.	.	.	
.	.	.	
행정주사보 · 농업주사보	<u>141</u>	<u>148</u>	+7
또는 통계주사보			

.	.	.	
.	.	.	
행정서기 또는 농업서기	<u>154</u>	<u>158</u>	+4
.	.	.	
.	.	.	
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8</u>	<u>19</u>	+1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농업연구사	<u>14</u>	<u>15</u>	+1
.	.	.	
.	.	.	
<u>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u>	<u>10.0</u>	<u><삭 제></u>	-10.0
<u>일반직 계</u>	<u>10.0</u>	<u><삭 제></u>	-10.0
<u>행정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u>	<u>10.0</u>	<u><삭 제></u>	-10.0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3]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18</u>	<u>121</u>	+3
특정직 계	<u>68</u>	<u>70</u>	+2
교수 · 부교수 또는 조교수	<u>55</u>	<u>57</u>	+2
·	·	·	
일반직 계	<u>50</u>	<u>51</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8</u>	<u>49</u>	+1
·	·	·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4]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제30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15</u>	<u>217</u>	+2
일반직 계	<u>215</u>	<u>21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14</u>	<u>216</u>	+2